

##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중 종교인 소득세 과세 및 근로·장려세제 집행분야 인력의 평가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,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「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0. 12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,

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관련 소득과약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 차장 밑에 소득과약팀을 신설하고,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인력 20명(5급 1명, 6급 18명, 학예연구사 1명)을 감원하며, 직급이 상향되었던 정원 5명(4급 또는 5급 5명)을 종전의 직급(5급 5명)으로 환원하고,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을 54명에서 61명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0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- 라. 기     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- 2) 입법예고(2020. 12. 4. ~ 12. 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##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차장 밑에 소득과악팀을 두되, 소득과악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③ 소득과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.

1. 인별·월별 소득과악 업무의 집행 및 관리
2. 인별·월별 소득과악 업무의 홍보·교육 및 민원 업무
3. 인별·월별 소득과악 업무 관련 자료의 수집·분석 및 관리

제3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제2항 및 「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으며, 별표 6의2의 정원 중 21명(행정사무관 3명, 세무주사 5명,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5명, 세무주사보 6명, 세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, 학예연구사 1명)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

제32조제1항 단서 중 “5퍼센트”를 “7퍼센트”로, “4명(행정사무관 3명”을

“3명(행정사무관 2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“5퍼센트”를 “7퍼센트”로, “121명(5급 1명, 6급 62명”을 “100명(6급 42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 중 “54명”을 “61명”으로, “44명”을 “51명”으로 한다.

별표 6의2 중 총계 “914”를 “911”로 하고, 일반직계 “910”을 “907”로 하며,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“35”를 “32”로 하고, 행정사무관 “113”을 “116”으로 하며, 세무주사 “243”을 “241”로 하고, 학예연구사 “2”를 “1”로 한다. 별표 7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“74”를 각각 “73”으로 하고, 행정사무관 “16”을 “15”로 한다.

별표 10의2 중 총계 “19,917”을 “19,901”로 하고, 1. 공무원 계(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) 및 일반직 계 “19,867”을 각각 “19,851”로 하며,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“73”을 “71”로 하고, 행정사무관 “1,031”을 “1,033”으로 하며, 세무주사 “4,248”을 “4,232”로 한다.

별표 11 제1호나목 업무 1)의 평가기간란, 같은 표 제2호 업무 1)의 평가기간란 및 같은 호 업무 2)의 평가기간란 중 “2020년 12월 31일”을 각각 “2021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1조, 제32조, 별표 6의2, 별표 7의2,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, 제1조의2의 개정사항은 2021년 1월 0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총액인건비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)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소득과악팀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소득과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세청 소득과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소득세과장이 분장한다.

제3조(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) 이 규칙 시행 당시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·운용하고 있는 별표6의2의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및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명과 별표10의2의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및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명은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,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6의2의 서기관 1명 및 행정사무관 4명과 별표10의2의 서기관 1명 및 행정사무관 3명으로 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조의2(차장)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조의2(차장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② 차장 밑에 소득과악팀을 두되, 소득과악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③ 소득과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.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1. 인별·월별 소득과악 업무의 집행 및 관리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2. 인별·월별 소득과악 업무의 홍보·교육 및 민원 업무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3. 인별·월별 소득과악 업무 관련 자료의 수집·분석 및 관리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31조(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. 다만,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제2항 및 「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으 | 제31조(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-----<br>----- . 다만,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제2항 및 「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으 |

며, 별표 6의2의 정원 중 28명  
(행정사무관 3명, 세무주사 10  
명,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5  
명, 세무주사보 9명, 세무주사보  
또는 시설주사보 1명)은 일반임  
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

② (생략)

제32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 
정원) ①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  
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 
같다. 다만, 「행정기관의 조직  
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  
제2항 및 「국세청과 그 소속기  
관 직제」 제39조제1항 단서에  
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 
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 
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  
의2와 같으며, 별표 7의2의 정  
원 중 4명(행정사무관 3명, 세무  
주사 1명)은 일반임기제공무원  
으로 임용한다.

②·③ (생략)

④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  
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. 다  
만,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

며, 별표 6의2의 정원 중 21명  
(행정사무관 3명, 세무주사 5명,  
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5명,  
세무주사보 6명, 세무주사보 또  
는 시설주사보 1명, 학예연구사  
1명)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 
임용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2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 
정원) ① -----  
-----  
---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7퍼센트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 3명(행정사무관 2명 -----  
-----  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 
-----.  
-----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제2항 및 「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<u>5퍼센트</u> 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으며, 별표 10의2의 정원 중 <u>121명</u> (5급 1명, 6급 62명, 7급 1명, 8급 57명)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 |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 <u>7퍼센트</u>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100<br><u>명</u> (6급 42명)-----<br>-----<br>-----. |
| ⑤ ~ ⑦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⑤ ~ ⑦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⑧ 국세청의 소속기관(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)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<u>54명</u> (5급 9명, 6급 <u>44명</u> , 7급 1명)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⑧ -----<br>-----<br>----- <u>61명</u> -----<br><u>51명</u> 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6의2]

국세청 공무원 정원표(제31조제1항 단서 관련)

| 직            | 급 | 별 | 현          | 행 | 개정안        | 증  | 감 |
|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|---|------------|----|---|
| 총계           | . |   | <u>914</u> | . | <u>911</u> | -3 |   |
| 일반직계         | . |   | <u>910</u> | . | <u>907</u> | -3 |   |
|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| . |   | <u>35</u>  | . | <u>32</u>  | -3 |   |
| 행정사무관        | . |   | <u>113</u> | . | <u>116</u> | +3 |   |
| 세무주사         | . |   | <u>243</u> | . | <u>241</u> | -2 |   |
| 학예연구사        | . |   | <u>2</u>   | . | <u>1</u>   | -1 |   |
|              | . |   | .          | . | .          |    |   |
|              | . |   | .          | . | .          |    |   |

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7의2]

국세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정원표(제32조제1항 단서 관련)

| 직 급 별 | 현 행 | 개정안 | 증 감 |
|-------|-----|-----|-----|
| 총계    | 74  | 73  | -1  |
| 일반직 계 | 74  | 73  | -1  |
| 행정사무관 | 16  | 15  | -1  |

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0의2]

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(제32조제4항 단서 관련)

| 직 급 별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 행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| 증 감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|
| ·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            | ·             |     |
| 총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19,917</u> | <u>19,901</u> | -16 |
| 1. 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|
| 계 (시 간 선 택 제 채 용 공 무 원 은 제외한다) | <u>19,867</u> | <u>19,851</u> | -16 |
| 일반직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19,867</u> | <u>19,851</u> | -16 |
| ·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            | ·             |     |
| ·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            | ·             |     |
|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                 | <u>73</u>     | <u>71</u>     | -2  |
| 행정사무관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1,031</u>  | <u>1,033</u>  | +2  |
| ·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            | ·             |     |
| ·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            | ·             |     |
| 세무주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4,248</u>  | <u>4,232</u>  | -16 |
| ·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            | ·             |     |
| ·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            | ·             |     |